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7조 제4항중 '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' 을 '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' 으로 한다.

제24조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하며 제2항본문중 '소모품대장' 을 삭제한다.

【 별표 1 】 의 품종구분 기준란중 (1)비품 ②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 단가가 10만원이상의 물품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